

2025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안내문

분야별 세부내용

[1] 주거환경분야 (기숙사 확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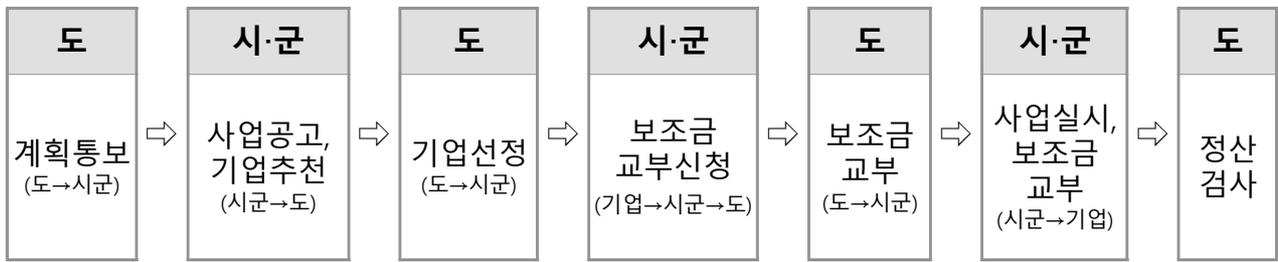
- 사업목적: 근로자 주거 개선을 위해 기업의 기숙사를 확충하여 근로자 사내 복지 향상 및 기업 인력난 해소
- 대 상: 도내 중소기업(제조업)
 - * 제조업 전업률(제품매출/전체매출) 30% 이상, 도내 공장등록 기업^{신규}
- 지원내용: 기업 기숙사 신·증축 지원 ※ 기숙사 리모델링 非지원
 - 신·증축: 설계비 및 건축비 지원

< 건축법상 용어 정의 >

- 신축: 건축물이 없는 대지(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)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(築造)하는 것
- 증축: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

- 지원규모: 16개소 정도 ※ 충북도 전체 규모/ 예산 한도 내 조정 가능
- 지원한도 : 입주 예정인원에 따라 상이*
 - (10인 이상) 최대 1.5억원, (5인 이상 10인 미만) 최대 1억원
 - * 입주예정인원은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으로 산정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'24.12월 기준) 제출 필수
 - ** 기업 자기부담률은 총사업비의 50% 이상 (부지 및 현물 제외),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신청 및 자기부담률 산정해야함
 - ***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

○ 추진절차



○ 유의사항

- 기숙사 부지

- 업체 명의 + 지목 ‘공장용지’ 또는 ‘대지’ 인 경우 신청 가능
※대표자 등 개인명의 불인정(단, 개인기업인 경우 예외 인정)
- 해당권이 설정된 부지는 신청 가능하나 후순위로 선정 예정
(기타 지상권, 전세권 등 부지 설정 권리 확인 예정)
- 부지 자체 확보만 되면 신청 가능, 사업장 내외 무관함

- 기숙사 증축

- 업체가 이미 기숙사 신축 사업 진행 중이면 신청 불가
- 증축의 경우 업체 명의의 건축물 확보
※임대건축물 신청 불가(소유주 동의서 제출해도 불가)

- 건축물 내 물품(가구, 가전 등) 지원 불가

- 「기숙사 건축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51호, 2023.3.15.제정)
및 「근로기준법」 제100조 등 건축기준 준수

- 기숙사 목적으로 최소 10년간 사용·유지하여야 함.

※준공후 부기등기 필수, 정산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

- 2025년 이내에 착공할 것

- 사업계획서 작성 시,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 등
관련 증빙자료 제출

※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 완료 여부에 관한 사항 정량평가점수에 가점 반영

- 기숙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·관리 철저

※운영 계획, 운영 주체, 운영비 확보, 시설 관리 등

- 기숙사는 근로자에게만 제공, 외부인 임대 및 사용 불가

- 기숙사 입사 근로자는 이용하는 기숙사로 주소 이전(권고)

[2] 근무환경분야

○ 사업목적: 근무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복지 향상과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기여

○ 대 상: 도내 중소기업(제조업)

* 제조업 전업률(제품매출/전체매출) 30% 이상, 도내 공장등록 기업 ^{신규}

○ 지원내용

- 작업장 내 화장실, 샤워장, 탈의실, 휴게실, 구내식당 등 공용 시설 설치 및 개보수 ※ 기숙사 내 공용시설 개보수도 지원 가능

- 작업장 내 환기·집진 시설 설치 및 개보수

- 가족친화시설(사내 어린이집, 가족화장실*, 수유실 등) 설치 및 개보수

※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, 영유아 거치대, 어린이용 위생 설비 등과 같은 영구설치 품목 지원 가능

※ 물품(비품) 구입은 **비지원**(단,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 기계설비는 지원허용^{신규})

○ 지원규모 : 도내 40개사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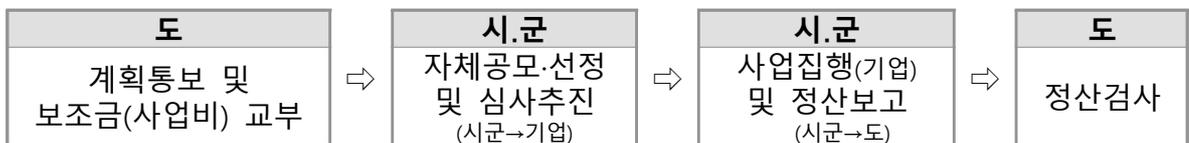
- 진천군 약 4~5 개소 선정 예정 ※ 예산 한도 안에서 조정 가능

○ 지원한도 : 개소당 15,000천원 이내

*기업 의무부담률은 총사업비의 30% 이상(부지 및 현물 제외),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신청 및 자기부담률 산정해야함

**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

○ 추진절차



○ 유의사항

-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·관리 철저(운영 계획, 시설 관리 등)

- 2025년 이내에 착공 및 준공할 것

- 기업체 명의 건물(사업장)내부 근무작업환경인 경우 신청 가능

※임대건물 신청 불가

공통 유의사항

○ 평가가점 사항 (3점)

-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
- 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,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
- 「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른 고용우수기업
- 「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대상 기업

※ 지정(확인, 인증, 상장 등)서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만 가점사항, 유효기간 없을 경우,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만 가점 가능

○ 우대사항

- (충북도) 기업정주여건사업 선정 기업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
- (진천군) '24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(동일 조건 시 우선 순위 부여 등)

○ 기업 중복 수혜 방지

- 최근 3년간('22~'24년) 동일 기업체에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혜택이 3건 이상 또는 지원금액이 총3천만원 이상일 경우,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혜택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 신청 제한
- 동일업체분야별(주거, 근무) 중복지원 불가

(예시)

- 주거환경(기숙사 증축) 및 근무환경(휴게실 개보수): 동일업체 중복 신청 불가
- 근무환경(화장실 개보수) 및 근무환경(구내식당 설치): 1개만 지원
- 지원한도(15백만원 자부담30% 이상내)에서 근무환경(사위실, 휴게실, 화장실): 지원 가능

○ 보조사업 시공업체 선정시

- 공사경험이 많은 도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,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

○ 사업 추진 중도 포기시

- '25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최종 선정 후 기업체에서 임의로 선정 사업 추진 포기 할 경우, 향후 2년간('26~'27년)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**공모 신청 제한**

참고 1 주거환경 (자금융자 지원)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
 -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_ 기업 정주여건(기숙사) 조성지원 자금
- 사업목적 :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(주거지원 분야) 폭발적 수요*에 대응하고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안 마련
- 대 상 : 도내 중소기업(제조업 영위, 공장등록기업)
- 지원내용 : 기숙사 신·증축을 위한 시설자금 금융권 대출 이차보전
- 지원규모 : 자금 50억원 *은행 협약자금
- 지원요건 : 기업당 최대 5억원, 5년간(1년거치, 4년상환) 융자, 저금리 대출(24.4분기 기준 2.01%)^{변동금리}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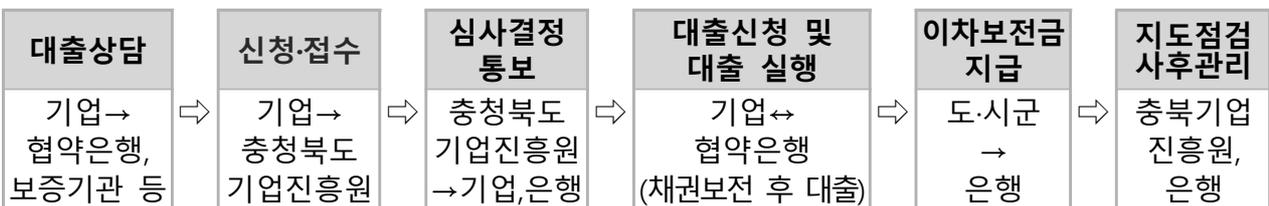
융자한도	융자기간	세부요건
5억원	5년 (1년거치, 4년상환)	- 상시근로자 5인 이상, 기업체 소유 건축부지 확보 선행 - 건축 공정률에 따른 분할지급 등

○ 추진방안 : 은행 협약자금 활용

재원조성 (취급은행)	기업부담 대출금리	융자비율	이차보전 예산	비 고
국민, 기업, 농협, 산업, 신한, 우리, SC제일, 하나	분기별 변동금리 (24.4분기 2.01%)	소요자금 (부가가치세 제외)의 80% 이내	개소당 5억원	

※ 취급은행 협의 하에 융자기간 연장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

○ 추진절차



○ 신청기간 : '25. 1. 6.부터 자금 소진시까지

○ 접수 및 문의 : 충북기업진흥원(기업지원부, ☎043-230-9751,9729)

□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중요재산 처분의 제한)

-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,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1.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
 2. 양도, 교환 또는 대여
 3. 담보의 제공

○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중요재산의 부기등기)

-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(附記登記)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·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
 2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

○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(중요재산의 부기등기)

-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
 -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(이하 “실적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보조사업자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 - 1.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
 - 2.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
 - 3.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9조 (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)
 -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.

□ 기숙사 건축 관련 법령 주요내용

- 「근로기준법」 제100조(부속 기숙사의 설치·운영 기준)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·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
 - 2. 기숙사의 설치 장소
 - 3.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
 - 4. 기숙사의 면적
 - 5.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제58조(기숙사의 면적)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.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.

○ 「기숙사 건축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151호) 제2조(건축기준)
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른다.

1. 일반기숙사인 경우: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가. 기숙사 개인공간(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. 이하 같다)을 지하층에
두지 말 것

나. 화장실과 세면·목욕시설, 채광·환기 설비, 냉·난방 설비 또는 기구
등을 적절하게 갖추 것

다.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.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단을
수 있는 창문(0.5제곱미터 이상)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.2미터
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

라.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.2미터 이상, 중복도 1.8미터 이상으로 할 것

마.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
한 규칙」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「소음방지를 위
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」에 적합할 것